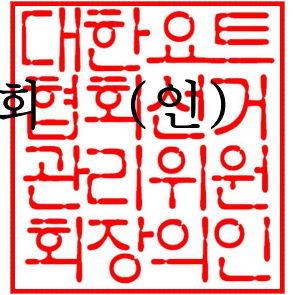


선거일 등 공고

2020년 12월 22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한요트협회장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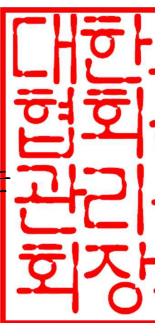


1. 선거명 : 제19대 대한요트협회장선거
2. 선거일시 및 투·개표장소 : 2020. 12. 22.(화),
스마트워크회의실(송파구 방이동)
※ 행사개최 (13:00) → 후보자 소견발표 → 투·개표(투표는 150분 이내)
3. 선거인 :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19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

4.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및 요건: 「대한요트협회 정관」(이하 '정관') 및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별지참조>

- ※ 대한요트협회 또는 등록단체(시도요트협회, 전국규모연맹) 비상임 임원의 사직기한 : 2020년 12.14.(월) 18시까지
- ※ 대한요트협회 또는 추천단체(시도협회, 전국규모연맹) 상임 임원, 직원의 사직기한 : 2020년 12.14.(월) 18시까지



나. 신청기간 : 2020. 12. 17.(목) ~ 18.(금) <2일간> 매일 09: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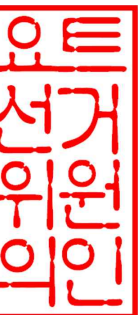
다.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제출

라. 구비서류

서류명	수량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필요서류 (미제출시 등록무효)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정관 제30조1항의 단체*에 한함)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시도·시군구」종목단체	1부	
• 정관 제24조의 2제1항 및 규정 제15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의2제6항 및 규정 제15조 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육회 및 추천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1부	규정상 제출 필요서류
○ 기탁금(2천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 회장의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	1부	
○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		
• 인영신고서	1부	
• 이력서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컬러 3.0cm*4.0cm) ※전자파일 포함	2매	

5.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장 1인 포함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포함
- 선거공보 발송
- 전화 이용 선거운동
- 정보통신망(SNS포함) 이용 선거운동



- 윗옷 및 어깨띠, 명함 이용 선거운동
- 대한요트협회(선거운영위원회) 주최 후보자 정책토론회
- 대한요트협회(선거운영위원회) 이외 단체 주최 토론회
※ 후보자 전원 동의시에 한함
-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전화, 정보통신망, 윗옷 및 어깨띠·명함 이용
선거운동만 가능>

6.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등

- 열람기간 : 2020. 12.18.(금) ~ 20.(일) <3일간>
- 열람장소 및 방법 등 : 대한요트협회에서 별도 안내 (02-420-4390)

7. 기타사항

- 후보자등록 문의 : 대한요트협회 선거운영팀 (02-420-4390)
- 소견발표 및 투·개표 / 위반행위 신고·제보 등 문의 : (02-420-4390)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선거관리규정(안) 개정(2020.10.16.) 및 대한체육회
장 선거일정(2021.1.18.)에 따라 제6조 4항 50일 기준을 40일 기준으로 적용.



<별지> 후보자등록 결격사유

근거	조항	내용	비고
<p>대한요트 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정</p>	<p>제11조</p>	<p>①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p> <p>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에서 개최되는 요트 대회 및 회의 등 월드세일링 및 아시아요트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p>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p> <p>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p>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p> <p>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p> <p>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p>	

